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케 함.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거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칭과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 명의로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표지만 발급가능하다.

-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의 보호자(운전대리인)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1)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 행 상 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 행 상 장애	유			
		무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 행 장	유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애	유			

4. 표지의 유효기간

가.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 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관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관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다 및 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라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다)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만 해당한다).
-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 하여 폐기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 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대상에서 제외되는 6급 장애인에게 표지 재 발급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본 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설명하여야 한다.

8. 벌 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대상 시설이 아님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고전화번호 : 02-1123-4567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예) 안내표지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단속인력으로 적극 활용

-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추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추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다. 단속방법

-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3)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팸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 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